

의안번호	2210665
의 퇴 인	장경태의원
회 답 일	2025.8.1.
추계번호	25D3053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“수사처”라 함)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와 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나누어 규정하고,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시장·군수·구청장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의회의 의장 및 시·군·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포함하며, 수사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있음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수사처의 수사 대상 확대 (안 제2조제1호, 제3호, 제3호의2, 제4호)
- 개정안은 수사처의 수사대상에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을 추가하고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수사대상 인적 확대

구분	현행법	개정안
고위공직자	가. ~ 차. (생략) 카. 검찰총장 타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<u>교육감</u> 파. <u>판사 및 검사</u> 하. <u>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</u> 거. ~ 더. (생략)	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타. _____ _____ <u>교육감·시장</u> · <u>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)</u> 파.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의회의 의장 및 시·군·자치구회의의 의장 하. <u>판사</u> 거. ~ 더. (현행과 같음) 러. <u>군판사 및 군검사</u>
수사기관 고위공직자	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가. <u>검찰총장</u> 나. <u>검사</u> 다. <u>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</u>

- 또한,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에 다음과 같은 죄를 추가하고 있음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수사대상 범죄 확대

구분	현행법	개정안
고위공직자 범죄	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아.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	아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죄 자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7조의 죄 차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죄 카. 「국민투표법」 제99조의 죄 타. 「공직선거법」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의 죄 파. -----마목까지 및 아목부터 타목 -----
관련범죄	가. 고위공직자와 「형법」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	가. _____ _____ _____ 죄

	나. <u>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「형법」 제133조, 제357조제2항의 죄</u> 다. <u>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「형법」 제151조제1항, 제152조,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의 죄</u> 라.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	및 수사기관고위공직자와 「형법」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 나. 고위공직자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 ----- -죄 및 「정치자금법」 제45조의 죄 다.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「형법」 제136조, 제137조, 제151조제1항 ----- -----
--	--	--

- 개정안에 따라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 및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수사 인력의 증원과 관련 예산(인건비, 기본경비, 사업비)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증원규모등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 수사처의 2025년도 기준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수사처 예산내역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인건비	기본경비	사업비			정보화	합계
		수사지원	공판활동	소계		
8,659	4,506	1,430	30	1,460	10,643	25,268

자료: 수사처의 제출자료와 사업설명자료(Ⅱ-1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